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278
----------	------

2024년 12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 상정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 1. 제안이유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십대 여성 전용 일시쉼터로 상담카페 운영,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등을 통해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위기 십대여성들의 조기발견, 일시보호, 긴급생활지원 등을 통해 초기개입하여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도록 운영 중인 시설임
-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초기개입 및 일시쉼터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

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1) 시설현황

- 시설명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52-1 2~3층
- 시설규모 : 상담카페 및 주간보호 공간 120㎡
- 주요시설 : 카페, 침실, 주방, 욕실, 화장실 등

### 2)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5. 1. 1. ~ 2025. 12. 31.(1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소요예산 : 379백만원('24년 기준)
- 위탁사무
  -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쉘터 및 상담카페 운영
  - 긴급 일시보호, 세탁·샤워 등 일시생활지원, 위기 상담지원
  - 위기 청소년 지원 정보제공, 귀가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조체계 구축 등

### 3) 민간위탁 필요성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가출 및 성매매 피해 등의 복합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십대여성이 낙인감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카페 및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센터를 운영하여 위기 상황에 따른 적절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연계하는 시설로 위기 십대여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노하우가 필요함
- 또한,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위기 십대여성의 욕구를 반영하여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초기개입 및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다양한 민간자원의 활용 및 연계하고 해당 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예산·회계,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등"이라 한다)과 시장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호 및 제9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2) 예산조치 : 2025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2024. 12. 31.) 예정임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sup>1)</sup>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함.
-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 동 민간 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늘푸른교육센터와의 기능 중복이 지적되었으며, 서울시 집행기관(평가담당관)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통폐합 권고 사항을 집행부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본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
- 이에 동 ‘서울특별시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동의안의 위탁 기간을 3년에서 2025. 1. 1. ~ 2025. 12. 31.(1년)으로 조정하여 제327회 정례회에 다시 제출되었음.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쉼터 및 상담카페 운영
  - 일시보호, 숙식제공, 세탁·샤워 등 일시생활지원 및 상담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위기 청소년 지원 정보제공, 귀가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조체계 구축

### <협약서상 사업 범위>

- 일시보호, 숙식제공, 세탁·샤워 등 일시생활지원 및 상담카페 운영
- 상담지원 및 청소년밀집지역 현장상담
-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정보제공, 귀가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등
-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 지원을 위해 시와 상호협의를 한 사항

## 2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

### 가.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

-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위기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 등을 위해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4개소를 위탁·운영 중임<sup>2)</sup>.
- 이 중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012년 최초 위탁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5차례 재계약, 재위탁 기간 중 2013년부터 현 수탁법인인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에서 4차에 걸쳐 12년간 운영 중에 있음.

2)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십대여성"이란 10세 이상 19세 이하인 여성을 말한다.
2. "위기 십대여성"이란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십대여성을 말한다.
3.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 등을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시 설 명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위탁법인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위탁기간	2022.1.1.~2024.12.31.(3년)
운영인력	총6명
소요예산('24년)	355,696천원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 2012.8.8.~2012.12.31. (5개월,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li> <li>- 2차 : 2013.1.1.~2015.12.31. (3년,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새날에오면)</li> <li>- 3차 : 2016.1.1.~2018.12.31. (3년,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새날에오면)</li> <li>- 4차 : 2019.1.1.~2021.12.31. (3년,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li> <li>- 5차 : 2022.1.1.~2024.12.31. (3년,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li> </ul>

#### 나.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운영 성과 및 문제점

- 민간위탁 사업 성과평가의 주요 성과로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일상 회복 지원 및 찾아가는 상담과 지원 활동, 성 착취 위기 상황 청소년 예방적 활동 지원, 위기의 십대 여성 지원을 위한 플랫폼 기능 활성화 및 연계 활동으로 통합지원의 성과가 있었음

### < 주요성과 평가 결과 >

종합점수	77.58점
우수사항-공통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의 청소년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일상 회복 지원 및 찾아가는 상담과 지원활동</li> <li>○ 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성 착취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 예방적 활동 지원</li> <li>○ 위기의 십대 여성 지원을 위한 플랫폼 기능 활성화 및 연계 활동으로 통합지원 체계 운영</li> </ul>
우수사항-사업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의 비전 및 핵심목표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으며,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출근거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어 있음</li> <li>○ 센터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측정하려는 노력이 돋보임</li> <li>○ 변화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지표에 대해 연도별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li> </ul>

개선요청 사항 -공통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위탁 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li> <li>○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구성원들의 이직률 저감 노력</li> <li>○ ESG와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 위탁 사무 지표관리 고도화 및 체계화 필요</li> </ul>
개선요청 사항 -사업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 대부분이 아웃리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센터는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표 개발이나 목표 추가 필요</li> <li>○ 목표나 추진과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에 실무자 역량강화 및 소진 예방은 관련성을 찾기가 힘들</li> <li>○ 계량지표도 센터의 추진 과제별로 세우길 권함. 현재는 아웃리치의 횟수나 신규이용자 기록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li> <li>○ 대부분의 서비스 경우 전년도 목표값을 충분히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목표설정이 낮게 설정되었음. 모든 세부 지표가 이렇게 때문에 목표수치에 대한 변경이 필요함. 예를 들어, 아웃리치 진행건수의 경우 23년 실적이 261건인데 24년 목표가 228임</li> </ul>

○ 종합성과평가서의 주요 사업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 최근 3년간 주요 운영실적 >

(단위 : 명/건)

구분	지원내용	2022년	2023년	2024.4	
사업 성과	위기상황 탈출지원	아웃리치 진행건수	2,043 (1,440)	261 (96)	90 (228)
		신규이용자 증가비율	-	69 (60)	23 (63)
		현장상담인력 신청	18 (26)	23 (20)	90 (20)
		상담인력 지속활동 비율	-	71 (70)	- (73)
	일시보호 긴급생활지원	생활환경 조성	3,039 (2,314)	3,801 (2,042)	1,196 (2,090)
		예방프로그램 진행횟수	-	64 (40)	6 (21)
		예방프로그램 참여인원	292 (473)	2,386 (670)	363 (569)
	지지체계 기능강화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277 (96)	83 (46)	15 (32)
		연계자원 횟수	-	29 (25)	7 (16)
지도점검 이행노력	개선요구사항 건수	1	5	-	
	이행완료 건수	1	5	-	
감점사례	협약사항 위반	1	-	-	
	협약서 제12조(노동자의 공개모집 채용)제4항에 따라 최소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나 2022년 2차 센터장 채용시 공고 미준수함.				

※실적 건수 아래 괄호는 목표값을 의미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sup>3)</sup> 따라 제출된 2024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2024. 7)<sup>4)</sup>를 보면 사업 성과에서 대상자 조기 발견 및 현장 상담, 일시보호 및 긴급생활지원, 기관 네트워크 및 자원 연계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사업 활성화 개선 노력, 협약 사항 위반 등에 있어 보완이 요구되었음(78.98점).
- 사업지표 대부분이 아웃리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표개발이나 목표설정이 부재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업성과 측정이 요구되었음. 예를 들어 전년도 목표값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목표설정이 낮게 설정되거나 목표나 추진 과제가 명확하게 계량지표로 설정되지 않은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함.
-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sup>5)</sup> 위기 십대여성의 일상회복 지원 및 상담 지원과 연계 활동을 통한 통합지원체계는 우수하나, 서울시 지도점검 및 서울시 회계감사에서 퇴사자 퇴직적립금 미 반납, 출근부 등 근태 관련 서류 정비 필요, 세출 예산과 목 오류 기입 등의 지적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탁 사무 운영에 대한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24. 2. 14. 조직담당관-1682] ‘2024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평가대상을 전체 사무로 확대(5억 이상 → 전체)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민간위탁 사무 중 ‘24.8월 ~ ‘25.7월 종료 사무 중 5억 미만 사무(21개)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함.

5)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2024.7).5p~8p. 총평 참고.

## 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 동 센터는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에<sup>6)</sup> 따른 위탁 사무이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에<sup>7)</sup> 의거하여 시장의 사무에 해당됨.
- 또한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일시보호, 숙식제공 등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 일시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예방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위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음.
- 동 센터의 운영 실적과 민간위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사 시설인 늘푸른교육센터(2개소)와 기능 중복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음. 특히 동 센터와 늘푸른교육센터(2개소)의 주요 기능이 동일한 바, 기존 센터 간의 동일 기능과 유사·중복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위기 십대여성의 성매매 피해 예방 및 재유입 방지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6)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 여성 지원시설 현황>

구 분	십대 여성일시지원센터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위 치	동작구 상도로152-1	관악구 관천로113	강북구 도봉로 98길
시설규모	120㎡,	550.2㎡	253.6㎡
운영법인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단체)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사)청소년내길찾기
최초위탁	2012.8	2009.8	2010.5
센터기능	<u>상담,아웃리치,일시보호, 긴급구조</u>	<u>상담,아웃리치,일시보호, 교육, 인턴십</u>	<u>상담,아웃리치,일시보호, 교육, 인턴십</u>
주요사업	<u>일시보호 등 일시생활지원, 상담 및 귀가지원, 지원시설연계</u>	<u>학력취득(검정고시), 인턴십활동, 취업연계</u>	<u>학력취득(검정고시), 인턴십활동, 취업연계</u>
운영인력	총6명	총7명	총5명
예산액(24년)	379백만원	647백만원	449백만원
비고	-	여성가족부 대안교육 위탁기관	-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평가담당관 자체평가결과에서 상담, 아웃리치, 일시보호의 기능이 청소년시설(쉼터 등)과 유사 기능 수행으로 소관부서 이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관 통·폐합을 2차례 권고받은 바 있음('22. 7., '24. 4.).

- 2024.4월 (평가담당관) 청소년시설(청소년정책과)과 유사 기능 수행으로 '25년 소관부서 이관(양성평등담당관→청소년정책과) 및 <b>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폐합 권고('22.7월, '24.4월 / 2회)</b>
- 2024.5월 (청소년정책과) 소관부서 이관 거부로 통·폐합 무산
- 2024.6월 (양성평등담당관) 소관부서 이관 거부로 인한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및 2025년 본예산(안) 제출
- 2024.7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일시지원센터와 늘푸른 교육센터의 <b>중복문제 검토 및 시설 간 통합적 연계시스템 구축 권고</b>

- 또한 「2024년 제5,6차 민간 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서도 위탁 심의 결과는 '적정' 이었으나, 늘푸른교육센터와의 아웃리치와 상담 등의 기능 중복문제를 검토할 것과 각 시설 간 통합적 연계시스템 구축 사항 개선을 권고받은 바 있음.

## <2024년 제5, 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기관	위탁기간	심의결과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시설형	재위탁	(사)좋은세상을 만드는사람들	3년 (’25.1.1.~’27.12.31)	<b>적정 (권고)</b>
<b>[권고] 의견</b> - 일시지원센터와 늘푸른교육센터의 <b>기능 중복문제 검토 (아웃리치, 상담 등)</b> - 각 시설 간 <b>통합적 연계시스템 구축</b>					

- 아울러 동 센터의 오프라인 아웃리치 중심의 운영 방식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성매수 방식과 성매매 피해자 유입경로가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상으로 옮겨지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능 제고가 요구됨.<sup>8)</sup>

### 3 종합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주·야간전용 컴퓨터로 구성된 일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위기 십대여성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고자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는 안으로,
- 위탁사무의 내용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며 특수한 전

8) 여성가족부(202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분석」결과 참고.

- 아동·청소년 성매수 SNS·채팅앱 등 온라인 활용: 46.2%(14년) → 85.8%(20년)

- 오프라인 중심 성매수 방식 → 온라인상의 헬퍼 등을 구하는 방식 변경

※ 헬퍼: 가출 청소년들에게 생활비와 잘 곳을 마련해 준다며 유인해 성폭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강요

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 대상사무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십대 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 만큼, 위탁 기간 동안 중복기능과 통합지원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빠르게 마련함과 동시에 기능통폐합 시에는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기능통폐합 검토 시에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동 센터가 ‘늘푸른교육센터(2개소)’와 아웃리치 중심의 기능이 중복되는 점, 유사 지원시설에 비해 사업공간 규모가 협소한 점,(120m<sup>2</sup>)<sup>9)</sup> ‘관악늘푸른센터’가 위치적으로 가까운 점(12km이내) 등을 고려하고,
- 아울러 사회적으로 변화되는 성매수·성매매 피해자 환경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아웃리치 방식의 사업방식 외 온라인상의 위기상담 관련 기능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2180-8146)

9) 참고.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별표3]청소년복지시설(일시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기준.

\*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278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가.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쉼터로 상담카페 운영,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등을 통해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위기 십대여성들의 조기발견, 일시보호, 긴급생활지원 등을 통해 초기개입하여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도록 운영 중인 시설임

나.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초기개입 및 일시쉼터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현황

- 시설명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52-1, 2~3층
- 시설규모 : 상담카페 및 주간보호 공간 120㎡
- 주요시설 : 카페, 침실, 주방, 욕실, 화장실 등

##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5. 1. 1. ~ 2025. 12. 31.(1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소요예산 : 379백만원('24년 기준)
- 위탁사무
  -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쉼터 및 상담카페 운영
  - 긴급 일시보호, 세탁·샤워 등 일시생활지원, 위기 상담지원
  - 위기 청소년 지원 정보제공, 귀가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조체계 구축 등

##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가출 및 성매매 피해 등의 복합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십대여성이 낙인감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카페 및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쉼터를 운영하여 위기 상황에 따른 적절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연계하는 시설로 위기 십대여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노하우가 필요함
- 또한,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위기 십대여성의 욕구를 반영하여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초기개입 및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다양한 민간자원의 활용 및 연계하고 해당 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예산·회계,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등"이라 한다)과 시장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호 및 제9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나. 예산조치 : 2025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최주윤 (☎2133-5048)